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93
----------	-------

발의연월일 : 2025. 10. 15.

발 의 자 : 문진석 · 안태준 · 최혁진
이재관 · 이정문 · 정준호
복기왕 · 박정현 · 맹성규
박수현 · 이연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다수임.

인명·재산 피해 규모가 큰 공동주택 화재 사례의 경우, 건축 안전 규제 강화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외장재, 소방설비 등의 측면에서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다수임.

현행 안전규제 수준에 부합하지 않아 화재안전에 취약성을 가지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 안전성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다수 세대, 많은 국민들이 거주하는 만큼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이들 공동주택의 신속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재 안전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능 보장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의2).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를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u>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계획을 수립하기</u>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 ----- <u>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기</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 <u>건축법</u> 」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